



환경부 기업의 자율환경관리협약제 고시

▶ 선진국형 자율규제로의 전환 계기 ◀

환경부 제공

- 환경부는 기업, 단체 와 정부,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한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지역환경보전과 기업경영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"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"을 제정·고시('02.9.19)하였다.
 - 자율환경관리제도는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되면서도 종전의 타율규제(법령 규정에 의한 직접규제)에 비하여 기업에서 자발적 의사결정에 의해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도 이해 당사자간의 마찰도 피할 수 있어 신사회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뿐 아니라 환경관리도 법적 요구수준 이상으로 향상되는 등 선진형, 시민사회형 환경관리의 전형으로서 미국, 일본, 유럽연합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90년대 들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기, 수질, 폐기물 분야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, 환경경영 및 감사 등 많은 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.
 - * '99.12월부터 동 제도는 업무편람 형식의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'02.9월 현재 351개 업체가 자치단체 및 환경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.

- 이번에 제정·고시된 「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」의 **협약대상 분야**는 지구환경오염물질, 대기, 수질, 소음·진동, 유해화학물질, 토양오염,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협약의 체결은 1분야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였다.

- **협약대상 기업**은 지구환경오염물질, 대기, 수질, 소음·진동, 유해화학물질, 토양오염,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또는 단체도 포함하였다.



□ **협약체결 절차는**

-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행정구역내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물질을 선정하여 환경기준, 환경여건 등을 감안한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의 달성을 위한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
- ② 협약체결 기업 또는 단체는 협약 참여의향서 및 환경오염저감 목표,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이행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협약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
- ③ 협약기업은 매년 협약대상분야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량, 사업 추진실적 등의 이행여부 보고 및 관할 행정기관의 이행여부에 대한 현지점검 및 평가 실시
 - ⇒ 또한, 관할 행정기관에서 자율환경관리협약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·학·연 관련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.
 - 협의회는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적 평가, 협약기업 선정 등 업무 수행

□ 협약기업에 대한 **인센티브**는 대기환경보전법, 수질환경보전법, 소음·진동규제법, 폐기물관리법, 유해화학물질관리법,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**보고·검사의 면제**, 방지사설 설치지급 **우선용자**(중소기업에 한함),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협약대상분야 **심사면제**, 각종 기술지원 등에 대하여 **우대**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**협약위반 기업**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약파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음.

□ 이번 "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" 제정을 통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환경이 개선되고 아울러 기업경영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
◆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 ◆

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 요약

1. 제정 사유

- 기업과 관할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한 지역 환경질 개선을 위해 '99.12월부터 업무편람 형식으로 작성·시행되고 있는 자율환경관리지침서를 조문형식의 운영규정으로 재정비하여 법적근거 강화를 통한 기업 환경오염저감 및 지역 환경질 개선
- 규제일변도의 오염매체별 환경관리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적 환경관리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기업경영목표 동시 달성

2. 법적 근거

-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제2항
- ⇒ "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·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"

3. 추진경위

- 자율환경관리제 추진계획 및 지침확정 시달('99.12.11)
- 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등 지시
- 자율환경관리체제 정착·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('99.12.31)
- 행정적·재정적 지원근거 신설(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제2항)
-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 초안 마련('02.6월)
- 해당 실·국 의견수렴('02.7.15~7.31)
- 지방자치단체(16개 시·도) 의견수렴('02.8.1~8.16)
- * 2002년 6월 현재 8개 기관(환경청 2, 시·도 6)이 351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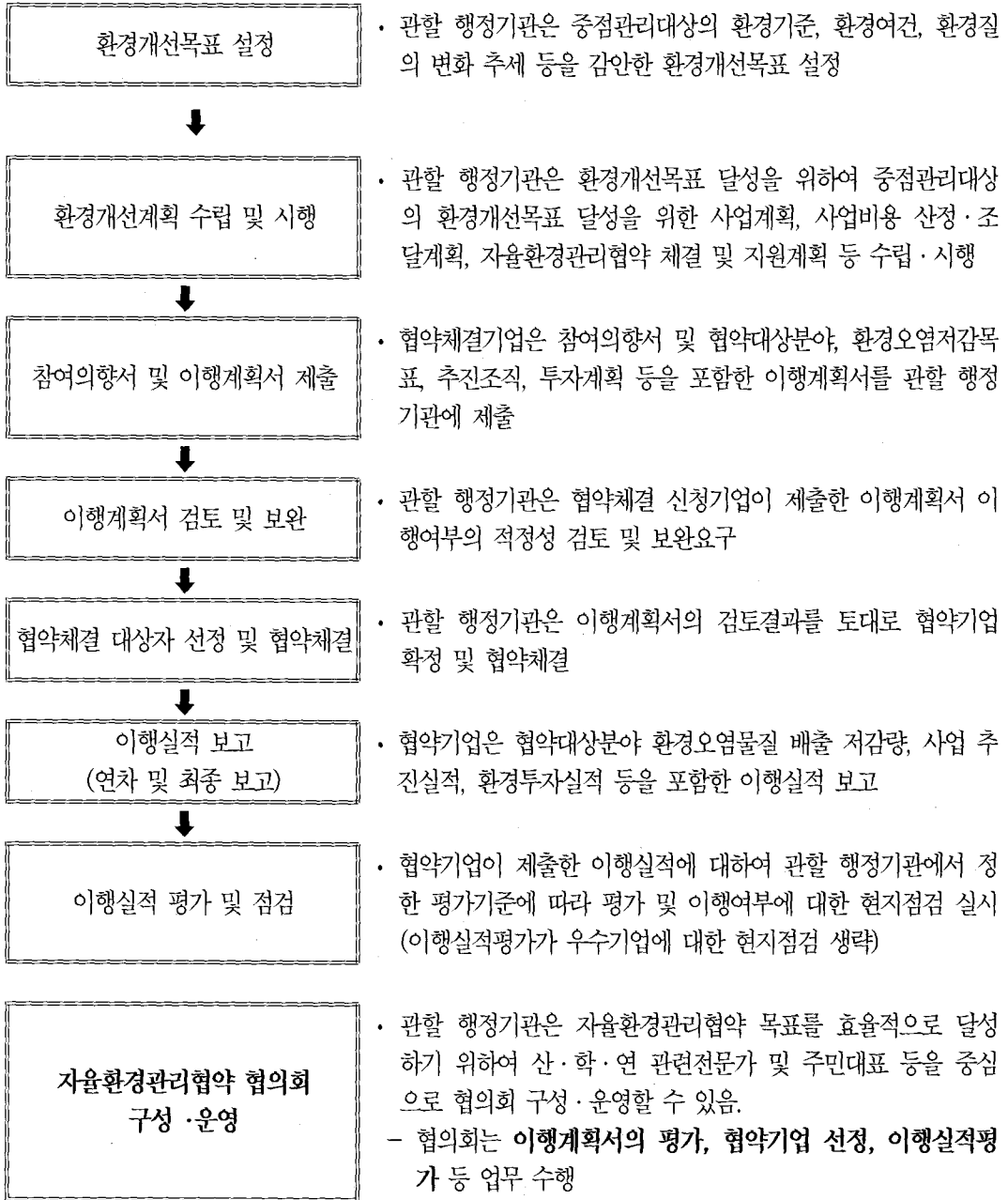
4. 주요 내용

□ 기본방향

- 지역별 환경오염 특성을 감안한 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또는 단체와의 자율적인 협약 체결
-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관할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



《 단계별 추진절차 및 내용 》





□ **협약대상 기업**

- 지구환경오염물질, 대기, 수질, 소음·진동, 유해화학물질, 토양오염, 오수·분뇨 또는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또는 단체

□ **협약대상 분야**

- 지구환경오염물질, 대기, 수질, 소음·진동, 유해화학물질, 토양오염, 오수·분뇨 또는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
- 협약대상 분야는 1분야 또는 2분야 이상도 가능

□ **협약기업에 대한 우대**

- 대기·수질환경보전법, 소음·진동규제법, 폐기물관리법, 유해화학물질관리법,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고·검사의 면제
- 사업장의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
- 중소기업에 한하여 방지시설 설치자금,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용자
-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협약대상 분야 심사 면제 등 우대
- 이행계획서 이행을 위한 행정적·기술적 지원

□ **협약위반 기업에 대한 조치**

-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계획서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행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와 허위보고, 민원 또는 오염사고 등을 야기하여 자발적 환경협약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약파기 가능

□ **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기관**

- 환경관리공단,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, 전국환경친화기업협의회 소속 지역별 협의회, 기타 환경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
- 관할 행정기관에서 자체 기술지원단 구성·운영 가능



□ 기타

- 관할 행정기관은 동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및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세부운영지침 제정·운영 가능
- 관할 행정기관은 협약기업에 관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협약 추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.
- 관할 행정기관은 협약체결 및 이행실적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